

## 독일의 대체 복무제

이 재 승,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년 1월

---

독일헌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 속에 전쟁을 거부할 권리를 개개인에게 부여하였다. 병역 거부권은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징병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련을 맞게 되었지만, 오늘날 독일의 대체 복무제는 아주 일상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도입 초기에 가졌던 평화주의적인 매운맛을 느끼기 어려운 정도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통과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 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 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사회 근무이다. 현재 근무 기간은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이다. 복무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를 제공하고, 위급 상황을 배제하거나 예방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영역의 봉사로 인하여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 이외에 이를 대체하는 다른 수단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에 대한 보수는 독일의 경제 사정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당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 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독일은 줄곧 40만 명 이상의 군 병력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25만 명으로 감축하였고, 이러한 정원 정책에 따라 군 복무자, 기타 복무자(대체 복무자 포함), 복무 면제자의 비율이 13:32:55에 이르고 있다.

---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 I. 병역 거부권의 내력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도 중 일부가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것은 청교도 혁명에 신앙적 양심에 반해서 군 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수평파(퀘이커)들이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이주하였고, 아메리카 식민지는 17세기 후반에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군대 내 비전투 대체 복무를 도입하였다. 영국 본토에서는 1757년에 군 복무 비용 대납 제도를 도입하였다. 독일에서는 1780년 프리드리히 대왕이 「메노파에 대한 은전령(1780)」을 통해 비전투원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징병제가 도입된 프로이센이나 독일제국에서 대체로 유지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독일은 재무장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등장한 히틀러 체제는 1935년에 개병제를 도입하였다. 나치 체제는 병역을 독일 국민의 신성한 사명으로 간주하고, 수천 명의 병역 거부자를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당시에 메노파, 여호와의 증인, 퀘이커교도, 형제단, 왈드파, 나사렛파, 재림파, 침례교도들이 엄청난 수난을 당하였다. 이들은 전시군형법(Verordnung über das Sonderstrafrecht im Kriege und bei besonderem Einsatz 1938)에 따라 사형, 징역형, 재산 몰수형에 처해졌고,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 물결에 따라 독일(서독)의 여러 주들이 병역 거부권을 헌법과 법률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에 헤센 주 헌법, 1947년에 바덴 주 헌법, 1950년에 베를린 헌법 등이 각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당시 반전·평화의 분위기는 1949년에 제정된 독일(서독) 헌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제4조 제3항)과 침략 전쟁 금지 규정(제26조)으로 뿌리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는 순탄치 않았다. 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194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설립되고, 특히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 세계 질서는 평화주의 기조와는 멀어져갔다. 독일(서독)은 1954년 나토에 뒤늦게 가입하여 사회주의 동구권에 대항하는 서방의 전선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접 국가들의 위구심이나 헌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무장은 속속 진행되었다.

독일의 국방장관 블랑크는 1955년에 101명의 지원병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연방군(Bundeswehr) 창설을 공식화하였다. 독일(서독)은 헌법 제정 당시에 징집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1956년 헌법 제7차 개정법(제12조)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함과 동시에 병역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1960년에는 대체 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대체복무법(Zivildienstgesetz)도 제정하였다. 의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를 모태로 하여 1983년에 병역거부법(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을 제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에 대한 법제를 완비하였다. 대체복무법과 병역거부법은 2003년도에 일부 개정되었다.

## II. 병역 거부의 본질

### 1. 독일헌법 제4조 3항: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전쟁 복무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독일헌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의 특수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헌법이 병역 거부권을 처음부터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을 행사하는 데에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병역과 대체 복무 의무가 헌법에 도입됨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관문이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되었다.

## 2. 양심적 결정

독일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적 결정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 의무로 체험하는 바, 선·악의 범주를 지향한, 즉 윤리적으로 진지한 결정’을 의미한다(BVerfGE 12, 45쪽). 그러나 양심은 신과의 관계나 신의 명령 하에서만 또는 특정한 세계관 안에서만 상정되거나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자도 일정한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수 있다.

양심적 결정 여부를 판별하는 심사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양심적 결정이나 양심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고, 대신 양심적 병역 거부 결정의 ‘진지함’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 3. 절대적 전쟁 거부

헌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특별한 요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상의 병역 거부권을 구체화하는 구병역법 제25조는 독일과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는 ‘온갖’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관문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구병역법 제25조를 둘러싸고 위헌 논쟁이 촉발되었다.

판례도 인간 생명의 말살에 대한 윤리적 거부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서 무기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병역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독

일과 다른 국가 간에 발생하는 ‘온갖’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만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다. 거부는 절대적인 것이야 하며 상황에 따른 거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족 간 전쟁, 침략 전쟁,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같이 ‘부당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수준의 의사는 병역 거부의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다(BVerfGE 12, 45쪽). 부당한 전쟁뿐만 아니라 정당한 전쟁까지도 거부해야 한다. 따라서 방어 전쟁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방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자는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방행정재판소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절대적 거부만을 유효한 병역 거부 의사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절대적 거부는 양심적 결정의 다층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병역법 제25조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오로지 ‘독단적 평화주의자’만을 보호한다고 꼬집는다.

## 4. 거부 대상으로서 병역

헌법 제4조 제3항이나 병역거부법 제1조는 거부 대상인 병역을 ‘무기를 휴대한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의미는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으며,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과 복잡한 현대 무기 체계의 특징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직접 살상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살상 행위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기술적 상태에 따라 살상을 야기하는 무기의 투입에 연결되어 있는 활동도 당연히 병역에 해당한다. 후방의 레이다 부대 복무, 나아가 통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대, 즉 후송 부대나 위생 부대도 이에 해당한다. 헌법이나 병역거부법도 대체 복무는 연방

군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병역을 군대 조직과 연결시키고 있다.

### 5. 완전 거부자

독일헌법은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에 따라 군 복무나 민간 구조 업무를 부과하고,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때에는 대체 복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정부 평화주의자들은 군 복무이든 대체 복무이든 대안적 대체 복무이든 모두 다 군대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가 결국 강제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하려고 한다. 이들을 완전 거부자 또는 이중 거부자라고 한다. 물론 완전 거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무정부 평화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법원은 독일헌법 제4조 제3항과 병역거부법 제1조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대체 복무의 거부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의 입장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데에도 양심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4조 제1항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BVerfGE 19, 135쪽). 이러한 완전 거부자들은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지만 간혹 병역법이나 대체복무법에 따라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 III.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

병역 거부자의 판정은 연방대체복무청(Bundesamt für den Zivildienst: BaZ)이 담당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은 1973년 병역 거부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족한 연방행정청으로서 연방가족부 산하기구이다. 연방대체복무청의 출범 이래 2006년

10월에 처음으로 여성(헬가 뢰스겐)이 청장에 임명되었다.

종전에는 병역 거부 신청인이 전적으로 민간인 신분일 때에는 연방대체복무청이, 입대를 목전에 둔 자나 군인, 예비군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의 병역 거부 사건 심사위원회와 심판소(Kammer)가 관할하였다. 그러나 2003년 병역거부법의 개정을 통해 연방대체복무청이 모든 병역 거부 신청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 1. 신청 서류

연방대체복무청은 병역 거부자의 판정 절차를 서면 심사 위주로 진행한다. 신청인은 연방대체복무청에 병역 거부 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와 서식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들은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다.

병역 거부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우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병무청은 접수 창구 역할을 하며, 신청서를 연방대체복무청에 송부한다. 신청서는 헌법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 형식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지방병무청에 “나는 헌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자 합니다”는 문구를 담은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충분하다.

양심적 결정의 동기에 대한 해명은 인격적이고 상세해야 한다. 이유서의 어휘 선택, 제목, 형식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인은 당연히 양심적 결정을 이미 내리고 있어야 한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법률은 불변적인 인격체로서 신청인을 염두

에 두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순히 귀동냥한 것을 반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에 그치는 것은 인격적 해명이 아니다. '상세한'이라는 표현도 사실 불확정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세함을 평가하는 데에 신청인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BVerfGE 69, 44쪽). '상세한' 그리고 '인격적인'이라는 용어가 너무 막연하고 불확정적이어서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표현이 범치 국가적 명확성의 원칙이나 행정의 합법률성, 권력 분립의 원리, 실효적인 권리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병역 거부 동기로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사유 등 다양하다. 양심적 결정의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하지는 않는다. 병역 거부의 배경으로서 학교 교육, 가정교육, 폭력 체험, 친척이나 친구의 사망, 전쟁 체험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 유대인 강제수용소 방문, 영화도 자주 원용된다.

신청인은 완전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력서를 표로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공백이 없도록 기재해야 한다. 병역 거부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이력서에 포함해야 한다.

## 2. 판정 절차

병역 거부 신청에 대해서는 연방대체복무청이 결정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 절차에서 신청서가 완비되고, 제시된 동기가 병역 거부권의 근거로 합당하고, 신청인의 전체 상황이나 연방청에 알려진 여타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기재 사항의 진실성에 의문이 없는 경우 또는 청문을 거친 결과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병역 거부자로 인정한다. 현역 군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실에 대한 기재 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대체복무청은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른바 서면 청문이다. 서면 청문 후에도 의문이 남아 있는 때에는 구두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청문 절차에 교회나 종교 공동체의 관계자나 신뢰 관계인은 신청인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다. 대체복무청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완비하지 못하고, 1개월 이내에도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제시된 동기가 청문을 거친 후에도 병역 거부를 밀받침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청문을 거친 후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연방대체복무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 중 90% 이상이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고 있다.

## VI. 대체 복무제 현황

### 1. 인정 현황

독일은 군 창설 이후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만에서 49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였다.

안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병역 거부의 신청 건수나 인정 비율도 낮았다. 그러나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병역 거부자의 인정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 90년대 후반에는 병역 거부자의 인정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렀고, 군 복무자 대 대체 복무자 비율이 각각 50%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군대 정원의 대폭 감축에 따라 독일은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우선 신체검사 단계에서 군 복무 적합자의 신체 조건을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입대 상한 연령을 25살에서 23살로 낮추어 입대

예정자수를 대폭 줄였다. 동시에 병역 거부자 인정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2005년 현재 입대 연령대 남자의 13% 정도가 군 복무를, 32% 정도는 대체 복무와 기타 대안적 대체 복무를 하고, 55% 정도는 어떠한 복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독일군 정원 정책은 의무 복무자를 56,400명 정도로 유지하고, 나머지를 지원병이나 직업 군인으로 충원하여 전체 독일군 규모를 25만 명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 2. 대체 복무 영역

헌법 제12조는 군 복무 의무자에게 군 복무, 대체 복무, 재난 구호 업무 중 하나를 이행하도록 예정해 놓고 있다. 병역법은 군 복무 이외에도 재난 구호(병역법 제13조의 a), 개발 봉사(제13조의 b), 경찰 근무(제42조, 제42조의 a)를 대체 근무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노동 강도나 구속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복무 형태별로 복무 기간이 상이하다. 따라서 군 복무는 9개월이지만, 군 복무 의무자가

### 가동 인력의 배치 현황

출생 연도	인력 총수	의무 복무자	%	기타 복무자*	%	복무 면제자	%
1979	416,034	132,889	31.94	139,883	33.62	143,262	34.44
1980	440,158	127,821	29.04	145,053	32.95	167,284	38.01
1981	439,725	114,866	26.12	137,887	31.36	186,972	42.52
1982	444,468	94,047	21.16	125,455	28.23	224,966	50.61
1983	434,181	66,798	15.38	101,326	23.34	266,057	61.28

출처: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15

### 가동 인력의 배치 계획

계획 연도	인력 총수	의무 복무자	%	기타 복무자*	%	복무 면제자	%
2005	447,325	69,500	15.54	140,305	31.37	237,520	53.10
2006	455,358	59,300	13.02	142,403	31.27	253,655	55.70
2007	440,753	56,400	12.80	138,589	31.44	245,764	55.76
2008	447,690	56,400	12.60	140,401	31.36	250,890	56.04
2009	402,902	56,400	14.00	128,705	31.94	217,797	54.06
2010	384,811	56,400	14.66	123,982	32.22	204,429	53.12

출처: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22

\* 기타 복무자는 대체 복무, 재해 복무, 개발 봉사, 경찰, 단기 지원 군복무자, 여타 대안적 대체 복무 등을 포함한다.

재난 구호 업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관청과 협력 관계를 6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개발 봉사는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경찰이나 국경 수비 대원으로 복무하는 자는 복무 기간에 군 복무에 소집되지 않는다.

대체복무법은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자를 위하여 군 복무에 갈음하는 몇 가지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른바 대체 복무이다. 대체복무법 제1조는 “대체 복무에서 인정된 병역 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의 대체 복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체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업무도 존재한다. 재해 구호(제14조), 개발 봉사(14조의 a), 해외 봉사(제14조의 b), 자원 봉사(제14조의 c), 경찰 근무(제15조), 자발 근로제(제15조의 a) 등이 대안적 대체 복무다. 대체 복무가 군 복무와 똑같은 9개월인데

비하여 대안적 대체 복무는 군 복무나 대체 복무 기간보다 비교적 길다.

대체 복무도 국가의 강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자 중에서 대체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복무법은 완전 거부자를 위하여 1969년에 ‘자발 근로’를 도입하여 스스로 적절한 봉사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자발적 근로제는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대체 복무보다 최소한 1년 이상 추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

대체 복무제의 도입 초기에는 군 복무보다 대체 복무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설정하였다가 그 후 군 복무보다 1개월 정도 길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와 동일하게 9개월로 하였다.

### 3. 대체 복무자의 급여

대체복무법 제35조 제1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군 복무자에 대한 규정을 대체 복무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 복무자에 대한 급여, 비용,

병역 거부자들의 복무 실태

출생 연도	대체 복무	재해 구호 (제14조)	개발 봉사 (제14조a)	해외 봉사 (제14조b)	자원 봉사 (제14조c)	경찰 (제15조)	자발 근로 (제15조a)	계
1979	113,138	1,530	—	680	13	100	13	115,474
1980	118,053	1,452	—	824	66	113	4	120,512
1981	112,757	1,235	—	852	225	134	—	114,203
1982	100,384	979	—	873	713	128	5	103,082
1983	76,932	713	—	809	1,708	142	3	80,307
1984	47,285	355	—	646	2,278	83	—	50,647

출처: Peter Tobiassen, Wehrgerechtigkeit 2005, Tabelle 13

비품은 대체 복무자 고용기관이 직접 지급한다. 대체 복무자 고용기관은 지출액 중에서 상당 부분을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대체 복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비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은 병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 복무자보다 실제 지급받는 액수는 작다.

- ① 급료
  - 1단계(1-3월차): 일급 7.41유로 월 합계 222.30유로
  - 2단계(4-6월차): 일급 8.18유로 월 합계 245.40유로
  - 3단계(7-9월차): 일급 8.95유로 월 합계 268.50유로
- ② 식비
  - 일당 7.20유로 월 합계 216.00유로
- ③ 피복비
  - 일당 1.18유로 월 합계 35.40유로
- ④ 원격지 수당(거주지에서 근무처까지의 거리에 비례)
  - 30km 이상인 경우에 1km당 0.51유로 한도 내에서 최고 204.00유로 지급(월)
- ⑤ 특별 수당과 퇴직금
  - 특별 수당(성탄절 수당)
    - 172.56유로(12월 15일 지급)
  - 퇴직금 690.24유로(제대일 지급)

- ⑥ 교통비(출근 비용)/임대 비용/기타 공무 상여비: 실비 지급

## V. 맺음

전후 독일은 군사주의와 나치즘을 청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헌법은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냉전 질서의 강화 과정에서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도 상당한 파행과 변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민주적이고 개혁된 군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군대는 원래 독일헌법의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 관련 사항이 정치적 쟁점이 되자 군대, 군 복무, 비상사태, 국방 감찰관 등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헌법에 대폭 추가하였다. 그것은 문민우위,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충성, 군인의 인권 존중, 국제법의 준수 등을 목표로 한 법치 국가의 모범적인 군사 헌법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7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